

19. 수리남 (Surinam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)	2% (2065년 14% 도달시까지 연 0.25%씩 체증)	2.5% (2065년 14% 도달시까지 연 0.25%씩 체증)	매년 체증
보험료율(사용자) (보편+사회보험)	6% (보편 4% + 사회보험 2%) (2065년 사회보험 14% 도달시까지 연 0.25%씩 체증)	6.5% (보편 4% + 사회보험 2.5%) (2065년 사회보험 14% 도달시까지 연 0.25%씩 체증)	매년 체증
연금수급 개시 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년	5년	-
노령연금 지급률	소득 2% × 가입기간	소득 2% × 가입기간	-
사망일시금	-	수급했던 소득비례 노령연금의 2개월분	사망일시금 신설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 및 현행법** : 1972년(공무원 연금), 1981년(고정 노령연금), 2005년(연기금 행정), 2014년(소득연계 노령연금)

2 제도형태

- **보편적 제도 및 사회보험**

3 적용대상

- **보편적 제도** : 수리남 거주자
- **사회보험** : 근로자 및 자영자
 - 공무원 특별제도

○ 가입자

- 보편적 제도 : 없음
- 사회보험 : 60세 미만은 월 적용소득의 2.5%(2065년 14% 도달시까지 연 0.25%씩 체증) ; 60세 이상은 보험료 부과 없음
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저소득 : SR\$500
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고소득 : SR\$5,000

○ 자영자

- 보편적 제도 : 60세 미만은 월 과세수입의 4% ; 60세 이상은 보험료 부과 없음
- 사회보험 : 60세 미만은 월 적용수입의 5%(2065년 28% 도달시까지 연 0.5%씩 체증)
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저소득 : SR\$500
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고소득 : SR\$5,000

○ 사용자

- 보편적 제도 : 60세 미만 근로자 월 소득의 4% ; 60세 이상 근로자는 보험료 없음
- 사회보험 : 60세 미만 근로자 월 적용소득의 2.5%(2065년 14% 도달시까지 연 0.25%씩 체증) ; 60세 이상 근로자는 보험료 부과 없음
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저소득 : SR\$500
-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고소득 : SR\$5,000

○ 정부

- 보편적 제도 : 결혼분 보충
- 사회보험 : 없음

○ 고정노령연금(보편적 제도)

- 60세. 외국 국적자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속적으로 10년간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

○ 소득비례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인 60세

○ 소득비례 장애연금(사회보험)

-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이고 영구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
- 장애정도는 지정된 의학위원회에서 평가함

- 소득비례 장애연금은 정상 퇴직연령 도달 시 정지되며 동일한 가치의 소득비례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○ **소득비례 유족연금(사회보험)**

- 사망자가 5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- 수급 가능한 유족 : 정상 퇴직연령 전 사망자와 5년 이상 결혼하였거나 동거한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인, 사망자와 5년 이상 결혼하였거나 동거한 이혼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인, 21세 미만 미혼 자녀(입양 자녀 포함)

○ **사망일시금(사회보험)**

- 소득비례 노령연금수급자의 사망 당시 유족배우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지급
- 수급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, 장례 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- 청구는 사망 후 9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**고정노령연금(보편제도) : 월 SR\$525 지급됨**

○ **소득비례 노령연금(사회보험)**

- 최종 60개월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%를 보험료 납부 연수로 곱하여 지급
- 월 최저 소득비례 노령연금 : SR\$300
- 월 최고 소득비례 노령연금 : SR\$5,000
- 급여액 조정 : 국가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최소 매 3년 단위로 조정됨

○ **소득비례 장애연금(사회보험)**

- 최종 60개월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%를 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 인정기간 연수를 곱하여 지급
- 가입자는 장애발생 후 정상퇴직연령 도달시까지 각 연도는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
- 월 최저 소득비례 장애연금 : SR\$300
- 월 최고 소득비례 장애연금 : SR\$5,000
- 급여액 조정 : 국가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최소 매 3년 단위로 조정됨

○ **소득비례 유족연금(사회보험)**

- 유족배우자 연금 :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소득비례 노령연금 또는 장애 연금의 70%를 일생동안 유족배우자에게 지급(가입자가 퇴직 전 사망시 최대 10년간 지급) ; 월 최저 유족배우자연금은 SR\$300.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소득비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70%를 각각 수급 가능한 고아에게 지급; 월 최저 고아연금은 SR\$300
- 급여액 조정 : 국가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최소 매 3년 단위로 조정됨

- **사망일시금(사회보험)** : 사망자가 수급했던 소득비례 노령연금의 2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**내무부(Ministry of Internal Affairs)**
 - <http://homeaffairs.gov.rs>
 -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전반적 감독
- **일반연금기금(General Pension Fund)**
 - <http://pensioen.rs>
 - 보험료 징수 및 소득비례 연금제도 운영
- **사회주택부(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ousing)**
 - <http://socialaffairs.gov.rs>
 - 고정 노령연금의 전반적 감독
- **고정노령연금 기금(AOV)**
 - <http://aovfonds.com>
 - 고정노령연금 운영
- **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**
 - <http://finance.gov.rs>
 - 고정노령연금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